

의안번호	2217146
의 퇴 인	강명구의원
회 답 일	2026.6.22.
추계번호	26D1132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 (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2조제3호(정의) 및 제5조 제1항·제2항(고엽제후유증환자 등의 결정기준)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고엽제후유증의 범위에 고엽제후유증을 포함하여 고엽제후유증환자도 고엽제후유증환자와 동일한 보상과 지원을 받게 함	의무규정
2	안 제6조제4항(고엽제후유증환자에 대한 보상 등)	고엽제후유증 관련 내용 삭제	의무규정
3	안 제7조(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에 대한 진료 등)		
4	안 제7조의2(보철구의 지급)		
5	안 제7조의3(수당의 지급 등)		
6	안 제7조의5(교육지원)부터 안 제7조의10(생계지원금)까지		
7	안 제8조의2(양로지원)부터 안 제8조의7(장례서비스)까지		
8	안 제8조의3(고궁 등의 이용지원)		
9	안 제29조제1항(자료조사 등)	고엽제후유증 3세를 역학조사대상에 포함	의무규정

II. 미첨부 근거규정 및 상세사유

1. 근거 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미첨부근거규정
1	안 제2조제3호(정의) 및 제5조제1항·제2항(고엽제후유증환자 등의 결정기준)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2	안 제6조제4항(고엽제후유증환자에 대한 보상 등)	
3	안 제7조(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에 대한 진료 등)	
4	안 제7조의2(보철구의 지급)	
5	안 제7조의3(수당의 지급 등)	
6	안 제7조의5(교육지원)부터 안 제7조의10(생계지원금)까지	미대상: 국가유공자로 인정되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동일한 지원을 받게 됨
7	안 제8조의2(양로지원)부터 안 제8조의7(장례서비스)까지	
8	안 제8조의3(고궁 등의 이용지원)	
9	안 제29조제1항(자료조사 등)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2. 상세사유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에게 동일한 보상 및 지원 실시(안 제2조제3호, 안 제5조제1항·제2항, 안 제6조제4항, 안 제7조, 안 제7조의2, 안 제7조의3)
 - 개정안은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고엽제후유의증의 범위에 고엽제후유의증을 포함하여 고엽제후유의증환자도 고엽제후유증 환자와 동일한 보상과 지원을 받게 하도록 규정하여 추가재정소요 발생
 - 현행법은 월남전에 참전하였거나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에서 고엽제 살포업무에 참가하고 전역·퇴직한 자 등이 고엽제에 노출되어 질병을 앓는 사람을 고엽제후유증환자와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구분하여 보상 및 예우에 차이를 두고 있음

[표 1] 고엽제후유증 환자와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등급판정체계 비교

구 분	고엽제후유증		고엽제후유의증	
질병기준	고엽제 노출과 질병간 의학적·과학적 상관성이 규명된 질병		고엽제 노출과 질병간 의학적·과학적 상관성 규명이 안 된 질병으로, 보훈정책적 차원에서 지원하는 질병	
등급체계	상이등급	상이 1~7급 (11개등급)	장애등급	고도/중등도/경도
등급 판정절차	신체검사 → 보훈심사위원회에서 판정		신체검사 → 지방청장이 판정	

자료: 국가보훈부

- 고엽제후유증 환자로서 상이등급 1~7급을 받은 경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전상군경 및 공상군경)로서 상이등급에 따라 보상금 월지급액은 708,000원부터 4,058,000원(2026년 기준)까지 차등지급하고 있음
-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경우, 장애등급을 고도/중등도/경도 등 3개 등급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수당 월지급액은 장애등급에 따라 626,000원부터 1,296,000원(2026년 기준)까지 차등지급하고 있음
- 국가유공자 보상금이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수당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아 현행법상 고엽제후유의증 환자가 고엽제후유증 환자로서 상이등급을 받고 보상금을 받게 될 경우 추가재정소요 발생
- 다만, 현재 고엽제후유의증은 3개 등급, 고엽제후유증은 11개 등급 체계로 구분되어 있어 등급판정 기준과 범위가 다르며, 여러 후유의증 질병을 11

개 등급 체계로 전환하여 등급판정하기 위한 구체적인 판단 기준이 없는 상황에서 후유증으로 전환되었을 때의 등급판정 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워 현 시점에서 등급에 따라 차이가 발생하는 보상금 등의 보훈지원에 대한 추가재정소요를 추계하기 곤란함

- 국가보훈부는 고엽제 관련 질환의 특성상 사망률 추계와 환자 개개인의 건강 상태 악화 속도를 장기적으로 예측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설명
- 참고로, 고엽제후유의증 장애등급별 환자 등록 현황은 아래 표와 같음

[표 2] 고엽제후유의증 장애등급별 환자 등록 현황(2020~2025)

(단위: 명)

구분	고도장애	중등도장애	경도장애	합계
2020	12,199	7,327	31,906	51,432
2021	11,752	7,690	31,489	50,931
2022	11,242	7,926	30,916	50,084
2023	10,830	8,141	30,389	49,360
2024	10,044	8,261	29,431	47,736
2025.11.	9,414	8,278	28,540	46,232

자료: 국가보훈부

□ 역학조사 대상에 고엽제후유증 3세 추가(안 제29조제1항)

- 개정안은 국가보훈부장관이 고엽제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자료조사, 역학조사 등을 할 때 고엽제후유증 3세 유전 가능성, 고엽제후유증환자의 자녀 및 손자녀를 포함하도록 규정하여 추가재정소요 발생
 - 현행법은 월남전에 참전하고 전역한 자등,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에서 복무하고 전역한 자등을 자료조사, 역학조사 등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음
 - 개정안은 고엽제후유증 3세 유전 가능성을 영향의 범위에 포함시키고 자료조사 등의 대상에 고엽제후유증환자의 자녀 등을 추가하여 추가재정소요 예상
- 다만, 자료조사 및 역학조사에 추가되는 고엽제후유증환자의 자녀 및 손자녀 수, 유전 가능성을 고려한 조사항목과 방법, 1인당 조사 비용 등을 현 시점에서 합리적으로 예측하기 어려워 추계 곤란

Ⅲ. 부대의견

□ 해당사항 없음

Ⅳ.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행정비용추계과	이미연	김안나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이미연	02-6788-4661	mylee@assembly.go.kr